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016
----------	------

2022. 3. 17.(목)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김영주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22년 3월 8일

다. 회부일자: 2022년 3월 10일

라. 상정일자: 2022년 3월 17일

(제3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영주 의원)

가. 제안이유

-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2021. 1. 5.)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1. 9. 24.) 제정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021. 4. 20.) 개정에 따라 환경교육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명을 ‘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 충청북도교육청환경교육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 및 환경교육 기본 계획과 환경교육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수정·보완하여 환경교육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명 개정
 - (현행)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 (개정)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기후위기”,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용어정의 추가(안 제2조)
- 학교장의 책무 사항 추가(안 제3조)
- 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4조)
- 위원 구성을 15명에서 11명으로 축소하는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수정(안 제6조)
-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 현행 시범학교 지정·운영 사항을 환경교육 연구학교 및 초록학교 지정·운영으로 변경(안 제8조)
- 환경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서성범)

가. 조례 개정 이유

-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조례명을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환경교육 관련 사항들을 반영한 조문 정비와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됨.

나. 주요내용

-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기후위기”,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용어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4조의 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이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에 따라 ‘2016 파리기후변화 협정’,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 동맹’, ‘탄소중립 법제화’ 확대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가 탄소중립으로의 변화를 가속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 정부도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세워(2020. 12. 7)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시기적절하고 타당한 개정이라 판단됨.

- 안 제3조에 환경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학교장의 책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안 제7조에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환경 관련 학생 체험활동과 교원 연수 및 환경교육에 대한 평가·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학교 환경교육의 체계적인 시행과 실효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8조에서 시범학교 지정·운영을 연구학교 및 초록학교 지정·운영으로 변경하는 것은 현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교육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맞게 용어를 수정·보완하고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 취지와 필요성 및 실효성이 인정되고, 개정 주요 내용과 구성 체계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없이 타당하며,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집행부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 론 요 지: “생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증진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하여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말한다.
3.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를 말한다.
4.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를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교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

2. 환경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3. 환경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3. 환경동아리, 환경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절약,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교육에 관한 사항

5. 교원의 환경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환경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본청의 교육국장과 소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교육계, 학계,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및 시민 사회단체,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과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에 속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위원 중 질병 등의 이유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⑦ 위원회 참석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조(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교육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 지원 사업
2. 환경 관련 학생 체험 활동
3. 환경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
4. 환경교육에 대한 평가·연구
5. 그 밖의 환경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연구학교 및 초록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 연구학교(이하 “연구학교”라 한다) 및 초록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연구학교 및 초록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학교 및 초록학교는 지역 특색에 맞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 교육감은 환경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교육기본법

[시행 2021. 9. 24.] [법률 제18456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22조의2(기후변화환경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종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2021. 9. 24.>]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환경교육법)

[시행 2022. 1. 6.] [법률 제17854호, 2021. 1. 5., 전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국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라.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2022. 9.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4. “탄소중립 사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기술·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말한다.
5.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6.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7.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변화를 완화 또는 지연시키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8. “온실가스 흡수”란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변화 및 임업활동 등에 의하여 대기로부터 온실가스가 제거되는 것을 말한다.
9.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10. “에너지 전환”이란 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에 이르는 시스템 전반을 기후위기 대응(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관련 기반의 구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환경성·안전성·에너지안보·지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11.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2. “기후정의”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의 책임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부담과 녹색성장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어 사회적·경제적 및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13.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14.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15. “녹색경제”란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

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를 말한다.

16. “녹색기술”이란 기후변화대응 기술(「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말한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신·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17. “녹색산업”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약칭: 신 재생에너지법)[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5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4. 1. 21., 2019. 1. 15.>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수소에너지
 - 나. 연료전지
 - 다.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 라.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태양에너지
 - 나. 풍력
 - 다. 수력
 - 라. 해양에너지
 - 마. 지열에너지
 -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10. 4. 12.]

□ 유아교육법

[시행 2021. 9. 9.] [법률 제18193호, 2021. 6. 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 6. (생략)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2. 3. 1.] [법률 제18461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명을 관련 법률 개정예 따라 '충청북도 교육청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 및 환경교육 기본계획과 환경교육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안으로 비용이 수반되지는 않음